

★ ㉠



문서 번호	토지관리과-10124
발제 일자	2016. 6. 23.
발제 여부	대시민공개
발신 번호	

발신처	도도물주소물장	도도물주소물장	도시관리과	
발신자	최준근	심종경	08123	윤로준
비고	이회 예산 과장 이윤영			



201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설치 및 집행 계획

□ 추진배경

- 기존에 설치된 도로명판은 차량용 위주로 사·중점역 설치되어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안내시설이 없어 보행자 불편

□ 추진기간 : 6월 ~ 12월

□ 설치계획 : 235개 추가 설치 예정

구 분	설치총계	2016년	기증설치	비고(단위:개)
인 계	2,253	235(10.7%)	1,981	
보행자용 한수식	1,305	35(3%)	1,233	3개 지방자치단체
보행자용 벽면형	948	200	748	

- 기존 설치물량의 13.7% 인 272개 설치 예정 (상반기 37개 설치 포함)
- 주택가 내부는 설치비용이 저렴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이면도로는 상가의 잦은 리모델링으로 훼손 가능성이 커 보행자용 **한수식 도로명판으로 설치**

□ 확보(소요)예산 : 18,000천 원

-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 18,000천 원



201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설치 및 집행계획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으로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에 따라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구민의 집(길) 찾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 『도로명 주소법』 제8조의7제1항(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제9조제1항(도로명판의 설치기준)
-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지방비 등 제출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583(2016. 2. 19), 서울시 자치행정과4424호(2016. 2. 24.)]
- ❑ 2016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교부액 통보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1708(2016. 5. 23), 서울시 자치행정과11348호(2016. 5. 30.)]

II

추진 개요

- ❑ 추진기간: 2016. 6. ~ 12. 31.
- ❑ 추진내용
 - 신규 보행자 도로명판 설치대상지 설정 조사
 - 하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병행 처리
 - 국비 50% 매칭에 따른 지방비 100% 확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현황

2015. 12. 31.

구 분	총 계	도로명판		
		현수식	이면도로용	벽면형
수량	1,981	1,213	20	748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유형



□ 도로명판 설치 예상 현황

(단위: 개)

구 분	설치합계	2016년	기존설치	비고(단위:개)
합 계	2,253	272	1,981	
보행자용 현수식	1,305	35(37)	1,233	37개 상반기 설치 수량
보행자용 벽면형	948	200	748	

※ 1,981(현재 도로명판)+970(미래계획)/우리구 교차로 수(1,949)=1.5개

※ 2016년도 보행자용 현수식 설치물량은 상반기 37개 설치량 포함

□ 특별교부세 확보 및 예산 현황(2016년도)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예 산 현 황		
		국비(특교세)	지방비	기타
예산	27,624	18,000	9,624	지방비: 시비 3,600 구비 6,024

III

교부 기준 및 조건

□ 특교세 교부 조건 현황

- 지자체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교부
-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액 범위 내에서 교부
 - 지방비는 교부세의 100% 이상을 '16년 예산(추경 포함)에서 확보 (최소 1 : 1 매칭)
- 다음 경우는 감액 교부
 - '15년 특교세를 다음연도로 이월한 시군구는 신청액의 50% 감액
 - '16.5.1 현재 '15년에 교부된 특교세를 집행완료하지 못한 시군구는 교부 제외
 - '15년도 지방비 부담액(특교세 교부액의 100%)을 전부 부담하지 못한 지자체는 미 부담액만큼 감액
- 최대 교부금액 및 최소 교부금액 설정
 - 보다 많은 지자체에 교부하기 위하여 최대 36백만원 교부
 - 재정집행 효율성을 위해 신청액이 5백만원보다 적거나 감액결과 5백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5백만원 교부
- 기타 정부정책, 특교세 교부·집행 등 감안 조정
- 특별 교부세의 사용
 - 특별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외에 사용 불가
 -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특교세 교부액보다 적게 확보한 지자체는 추경에서 지방비를 전액 확보

IV

예산 확보(매칭 등)

□ 201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총 계	예 산 현 황		
		국비(특교세)	지방비	추경예산
예산	27,624	18,000	9,624 (시비 3,600 +구비 6,024)	8,376

※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교부세의 100%(8,376천원) 지방비 확보 필요

[지침] 2016년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계획 교부 기준

- ②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액 범위 내에서 교부
 - 지방비는 교부세의 100% 이상을 '16년 예산(추경 포함)에서 확보(최소 1 : 1 매칭)

V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 6. 10.~6. 30.: 확충 설치 계획 방침 및 특교세 간주처리
- 7. 1.~9. 31.: 안내시설물 설치 위치 검토 및 현장 조사
- 10. 1.~12. 31.: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계획 및 설치

※ 상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병행 실시[토지관리과-1939(2016.2.2)]

□ 추진방향

- 전철역 출구에서 나오면 볼수 있는 **앞방향용 도로명판** 설치
- 주택가 내부는 설치비용이 저렴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이면도로는 상가의 잦은 리모델링으로 훼손 가능성이 커 보행자용 **현수식 도로명판**으로 설치

□ 추진사항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 위치 적정성 · 안전성 여부 조사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훼손·망실 여부 확인 및 유지보수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한 “로”급, “길”급 시설물 추가 설치
-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위치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설치

※ 상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병행 실시[토지관리과-1939(2016.2.2)]

VI

행정 사항

-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 실적 월별 제출: 서울시 자치행정과
-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간주처리 요청: 기획예산과

- 붙임 1. 행자부 주소정책과 특별교부세 교부 공문 1부.
2. 제14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자료 1부. 끝.